# 『영남법학』 투고 및 심사규정

2021년 11월 29일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『영남법학』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간행) ① 『영남법학』은 연 2회 발간한다.
  - ② 『영남법학』의 정기 발간일자는 매년 6월 30일, 12월 30일로 한다.
- 제3조(논문의 투고자격) ① 국내외 각 대학교 전임교원, 박사학위 소지자, 변호사 자격 소지 자 등은 단독으로 투고할 수 있다.
  - ② 박사학위가 없는 대학원 수료자 및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투고할 수 있다.
  - ③ 편집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투고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- 제3조의2(이해상충 대처와 특수관계인의 투고) ① 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미리 밝혀야 한다.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,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인 자) 또는 배우자, 자녀, 4촌 이내의 친족(이하 '특수관계인' 이라 함)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.
  -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'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 식'을 제출한다.<신설>
- 제3조의3(편집위원의 투고) 『영남법학』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을 편집회의 및 심사에서 배제한다.<신설>
- 제4조(논문의 투고시기 및 요건) ① 『영남법학』의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5월 15일, 11월 15일까지로 한다.
  - ② 논문투고신청은 『영남법학』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(https://yulaw.jams.or.kr) 또는 전자우편(E−mail)을 이용하여야 한다.
  - ③ 『영남법학』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    - 1. 본 학술지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하는 연구논문·판례평석·번역문·서평·연구자료 등
    - 2.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적이 없을 것

- 제5조(논문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) ① 『영남법학』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은 『영남법학』 논 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.
  - ② 『영남법학』에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'논문투고신청서', '저작물 이용 동의서', '연구윤리서약서' 및 '논문유사도검사소명서'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심사위원의 선정) 편집위원회는 『영남법학』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
- 제7조(심사위원의 자격)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
  - 2. 박사학위 소지자
  - 3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
    -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.
- 제7조의2(기밀유지)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원고료와 심사비의 지급) ① 『영남법학』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8조의2(게재료) ①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- 1.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
    - 2. 연구소가 비회원에게 청탁한 경우
- 제9조(투고논문) 『영남법학』 투고논문은 『영남법학』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.
- 제10조(접수대장)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.
- 제11조(저작권) 『영남법학』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귀속한다.
- 제12조(심사기준)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제4조 제3항에 정한 수록요건
- ②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연구의 필요성
- ③ 연구방법의 논리적 체계성 및 적절성
- ④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문적 기여도
- ⑤ 연구내용의 근거제시 및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과 객관성
- 제13조(심사위원별 논문심사의 판정) ①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심사표에 심사의견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'판정의견'을 제출한다.
    - 1. '게재가능'
    - 2. '수정 후 게재'
    - 3. '수정 후 재심사'
    - 4. '게재 불가'
  - ③ 제2항 제1호의 '게재가능' 판정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 제2호의 '수정 후 게재' 판정, 제3호의 '수정 후 재심사' 판정 및 제4호의 '게재 불가' 판정의 경우에는 각각 논문내용의 수정 보완할 점 및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.
- 제13조의2(종합판정 및 재심사)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'게재가능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사' 또는 '게재불가'로 종합판정을 한다.
  -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'수정 후 재심사'로 최종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제 출자는 차호에 수정 후 투고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 투고자가 차호에 투고하지 않거나 재심사 후에도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'게재불가'로 처리한다. <신설>
  - ③ 전항의 논문은 차호에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. 이때 최초심사에서 '게재불가'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<신설>
  - ④ 전항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때 '게재가능' 또는 '게재불가'로만 판정하며, 편집위원회는 재심사의 결과 '게재가능'이 둘 이상이면 '게재가능'으로 최종 판정한다.
- 제14조(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) 제13조의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① 원고의 내용이 『영남법학』 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
  - ②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
- 제15조(심사결과의 통보 및 수정요청) ① 편집위원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판정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요지를 논문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 이 경우 이메일(E-mail)로 통보할 수 있다.

- ② 편집위원장은 제13조의2에 의하여 '수정 후 게재' 또는 '수정 후 재심사'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편집위원장은 제13조의2에 의하여 '게재가능'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상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제출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'게재불가'로 최종 판정한다.
- 제15조의2(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)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  - ②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즉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,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6조(게재예정증명서)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-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완성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
  - 2.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판정을 받을 것
- ③ 게재예정증명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.

제17조(기타) 『영남법학』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규정을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10. 6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3.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3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3.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11. 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 『영남법학』 원고작성 요령

『영남법학』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의 논문작성요령을 주지하시기를 바라며, 이에 따르지 않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

### I. 일반사항

- 1. 논문게재신청서에는 논문제목, 성명, 소속, 주소, 이메일(E-mail)주소, 전화번호(자택, 사무실)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2.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(연구책임자)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. 구분은 제1저자·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한다.
- 3.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(A4용지 20매 이내)를 원칙으로 하며,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본 1면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<신설>
- 4.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. 다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의 논문인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.<신설> 모든 논문에는 한글초록과 영어초록을 첨부한다.
  - ① 용지종류 : 사용자정의 [180 × 245mm]
  - ② 글자모양 : 신명 신명조 (장평 : 90, 자간 : -2, 크기 : 10)
  - ③ 문단모양: 왼쪽여백 오른쪽여백, 문단 위 문단아래, 낱말간격: 0.

들여쓰기: 10pt, 줄간격: 170%, 정렬방식: 혼합

④ 편집용지

가. 용지종류 - 용지방향 : 좁게(보통)

나. 여백주기 - 위쪽(23), 아래쪽(25).

안쪽(28). 바깥쪽(28).

머리말(12), 꼬리말(0)

- ⑤ 각주 : 글자크기(8.5), 글자모양(신명조), 줄 간격(130%)
- 5. 목차는 I, 1, 1), (1)의 순서로 표기한다.
- 6. 인용을 할 때에는 ""를 사용하고, 강조를 할 때에는 ''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.

## Ⅱ. 주석 작성방법

- 1.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.
- 2. 인용문헌이 국문·일문 또는 중문인 경우, 저서는 「」로, 논문은 ""로 표시한다. (한국, 일본, 중국 문헌 예시)
  - ① 저서: 저자, 「저서명」, 출판사, 출판년도, 인용면.

- ② 논문: 저자. "논문제목". 「저서명」권호, 발행처. 출판년도, 인용면.
- ③ 잡지: 저자, "논문제목", 「잡지명」 권호, 발행처, 출판년도, 인용면.
- ④ 학위논문: 저자, "논문제목", ○○대학교 대학원, 박(석)사 학위 논문, 출판년도, 인용면,
- ⑤ 기념논문: 저자, "논문제목", 「기념논문집명」, 발행처, 출판년도, 인용면.
- ⑥ 신문 : 신문명, 발간일자, 인용면.
- ⑦ 인터넷자료 : 인터넷자료 인용면이 포함된 전체 웹주소.
- 3. 인용문헌이 영문문헌인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(외국 문헌 예시)
  - ① 저서 : 저자, 서명, 출판사, 출판년도, 페이지.
    - 영문서명(歐美書名)은 이탤릭체로 함.
    - 페이지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.
    - (예: 영/불어 p.pp., 독어 S.SS., 일어 頁)
    - (예시) H.A.Jacops, Recent Studies in International Law, Harvard Law Review, 2010, p.25.
  - ② 논문 : 필자, 논문명, 수록책자명, 발행처, 발행년도, 페이지.
    - 논문명의 앞뒤에 " " 표시.
    - 수록책자명은 이탤릭으로 함.
    - 페이지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.
    - (예시) T. J. Marx, "Social Security in Europe", Welfare, Law Press, 2000, p.9.
  - ③ 반복인용: 저자, 반복인용 표시, 출판년도, 페이지.
    - 반복인용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.

(예시) Id., op. cit. 등

- 4. 인용문헌이 공저자에 의한 경우 "·"를 사용하고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.
- 5. 판례의 인용은 법원공보의 인용방식(대법원 2002.02.22. 선고 2000다1234 판결) 또는 대법 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(대판 2002.02.22. 2000다1234)을 따른다.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 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.
- 6. 영문 성명, 논문명,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.
- 7. 일본어, 중국어 논문명과 서명은 번역하여 표기할 수 없다.
- 8.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"참조" 표시를 할 수 없다.

## Ⅲ. 목차, 초록, 참고문헌작성방법

1. 모든 논문에는 참고문헌, 국문초록, 영어초록이 있어야 하며, 초록에는 영어 목차에 필요한

논문의 제목과 작성자의 영문이름을 첨부한다.

- 2. 국문초록과 영어초록은 A4 용지 2/3~1장을 넘지 않는다.
- 3. 모든 논문에는 각각 5개 이상의 국문 주제어, 영어 주제어가 있어야 한다.
- 4. 참고문헌은 저자명,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, 학술지명, 권호, 발행년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### (국내 참고 문헌)

- ① 저서 : 저자, 서명, 출판사, 출판년도.
- (예시) 홍길동, 법학개론, 민음출판사, 2015.
- ② 논문 : 필자, "논문제목", 「서명」제○권 제○호, 발행처, 발행년도.
- (예시) 홍길동, "사회변화와 젠더", 「영남법학」 제1권 제1호,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4.

#### (외국 참고 문헌)

- ① 저서 : 저자, 서명, 출판사, 출판년도.
- (예시) J. Smith, A Casebook on Contract, 9th ed., Sweet & Maxwell, 1992.
- ② 논문 : 필자, 논문명, 수록책자명, 발행처, 발행년도.
- (예시) J. Birds, "Self Regulation and Insurance Contracts", in New Foundations for Insurance Law, ed. by F. Rose(London), 1987.